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10.2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10월 1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10월 22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이영복

가. 제안이유

동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·공포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·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자치법규 제·개정시 20일 이상 입법 예고하되,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,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,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생략하도록 함.

- (2)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자치법규 발의안 및 주민청구조례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,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미제출 하도록 함.
- (3) 안 제15조에서 제21조까지 자치법규의 공포는 공포전문을 붙여 공포 하되 공포일은 구보 발행일로 함.
- (4) 안 제22조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.
- (5)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 범위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/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.
- (6) 부칙에 관련 조례인 「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, 「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」 폐지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조례안은 단위업무별로 구분·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현행 조례들을 통합하여 입법 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절차, 공포 및 시행, 자치법규의 정비,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·운영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,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입법예고 및 우리 구 조례·규칙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